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경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941 발의연월일: 2022. 3. 23.

발 의 자:유경준·권명호·추경호

김태호 · 김 웅 · 김승수

태영호 · 김용판 · 조명희

황보승희 이 영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병역법 제33조제2항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'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'를 하는 경우 경고 처분을 하고,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제33조제2항제2호 중 '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' 부분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 및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에 따라 위헌결정을 내림(2019헌마534, 2021.11.25.).

이에,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조항 중 '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'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2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정당에 가입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	제33조(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	2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에는 경고처분하되, 경고처분	
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	
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. 다만,	
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	
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	2. 정당에 가입한 경우
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	
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	
3. ~ 7. (생 략)	3. ~ 7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